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들어가며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준비했습니다.

목 차

01 임신·출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4
산모건강관리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출산비용 지원 5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6

02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9
긴급복지지원 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9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10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10
가족역량강화 지원 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
아동수당 12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2
보육료 지원 13
가정양육수당 지원 1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14
아이돌봄서비스 14
지역아동센터 지원 1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5
가사·간병 방문 지원 15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16
육아종합지원센터 16
공동육아나눔터 16
초등돌봄교실 16

03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19
공공주택 지원 19

04 교육·취업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2
자녀 교육비 지원 22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22
취업성공패키지 23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23

05 금융·법률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25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25
근로장려금 26
자녀장려금 26
소액보험 26
미소금융 27
청소년한부모 적금 27
희망키움통장 I 28
희망키움통장II 28
청년희망키움통장 28
청년저축계좌 28
내일키움통장 28
출생신고 완료전 미혼부 자녀 지원 2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30
요금감면 혜택 30
스포츠 강좌 이용권 3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31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3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1



임신·출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포함)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산모건강관리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산부 입소가능)〉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4471
	애란원	02-393-4725
	마음자리	02-2691-4365
	마포애란원	02-711-4725
	도담하우스	02-449-8893
	바인센터	02-2671-0693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성현원	051-545-9272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새싹들의집	031-457-4383
	광명아우름	1600-0152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도담도담의집	061-684-0505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제주	애서원	064-773-2010

※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 외, 공동형 미혼모자복지시설,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입소문의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양육·돌봄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2020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신고대상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신고방법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신고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조치사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월 20만원)

지원내용 2020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중위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실비(최대 500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2,902,933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2020. 3. 23. ~ 7. 31.)〉

①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재산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 신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

② 지원횟수 제한 폐지
-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대상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지원내용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신청문의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전국 거점기관 안내〉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55-8042
5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69-1546
6	광주	광주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204-6314
7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932-9931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229-3481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033-264-3655
11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1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182
14	전남	여수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659-4171
1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75-0831
16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55-243-0233
17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5-8005

신청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신청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1개의 보청기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0~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최대 84개월간 지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00,000원 추가 학비 지원

〈2020년 지원금(3. 1.부터 적용)〉

(단위 : 원/월)

과정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60,000	240,000
방과후과정 지원금	50,000	70,000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4~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기본보육(09:00~16:00)기준

(단위 : 원/월)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470,000	414,000	343,000	240,000	240,000	240,000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반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단,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가정 포함) 가정 등

지원내용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www.dreamstart.go.kr, ☎02-6283-02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종일제 돌봄 :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9,890원)				영아종일제 (월 197.8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만원)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158.2만원 (80%)	39.6만원 (20%)
나형	120% 이하 (569.9만원)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118.7만원 (60%)	79.1원 (40%)
다형	150% 이하 (712.4만원)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29.7만원 (15%)	168.1만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97.8만원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청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2002. 1. 1. ~ 2009. 12. 31. 사이 출생한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2020년에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카드사	온 라 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부츠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신청문의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48,000원), 27시간(월 391,500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조)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신청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지원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

신청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시설·주거

한부모·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 (연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02-363-5722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81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부산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26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55-8042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234-6053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765-831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80-2522
경북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244-9701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4-8335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신청문의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교육·취업

일자리를 찾고계신가요?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강원	마리아의집	033-264-0194
부산	마리학교	051-253-7543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043-285-4438
대구, 경북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천안새소망의집	041-568-0695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대전, 세종	대전자모원	042-934-6934	경남	로뎀학교	055-292-4747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제주	무궁화아카데미	064-773-2010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지원내용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훈련 지원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신청문의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각 센터별 문의 후 신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지원내용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운영

신청문의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 5일) 제공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신청문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장학금	대학재학 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학자금 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1599-200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 취업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원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 직업능력증진(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 지급)
- 3단계 : 집중취업알선(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50원만원 최대 150만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이외에도 자활근로, 정부지원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자활근로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주민센터 신청
– 정부지원일자리 : 일모아 (www.ilmoa.go.kr)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20. 3. 31.~)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지급

구 분	현 행		개 선
첫 3개월	80% (상한 150만원)	⇒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50% (상한 120만원)		80% (상한 150만원)
7개월~종료일			50% (상한 120만원)

-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 이후에는 1천650만원으로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 3월 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 '20. 2. 15.~'21. 2.14. 동안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 중 3. 15.~3. 30.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3. 31.~4. 14.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금융·법률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19. 7. 1. 시행)
(개정 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 긴급지원 →
(개정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 해당 시 지원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 6. 25. 시행)
(개정 전)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
(개정 후) 집행권원 확보위해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한부모가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구비 필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로장려금(2020년 신청)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지원내용

구 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신청방법 전자신청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자녀장려금(2020년 신청)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9. 12. 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지원내용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신청방법 전자신청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소액보험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지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저소득층아동보험 등)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누리집 (www.kinfa.or.kr)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종류〉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기간 제외)	금리
창업자금(무등록 사업자)	5백만원	5년 이내	2%
운영자금(무등록 사업자)	5백만원	5년 이내	2%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5년 이내	4.5%
임대주택보증금대출	2천만원	2년 이내	2.5%
취업성공대출	3백만원	3년 이내	4.5%
긴급생계자금대출	1천만원	4년 이내	4.5%
교육비지원대출	5백만원	5년 이내	4.5%
취약계층 자립자금*	12백만원	5년 이내	3.0%
취약계층교육비대출*	5백만원	5년 이내	4.5%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	2천만원	2년 이내	2.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누리집(www.kinfa.or.kr)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문의바랍니다. (누리집 http://kinfa.or.kr)

청소년한부모 적금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로서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우대적금 만기 해지자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가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 만기 해지 시, 서금원이 월불입액 최대 10만원(연120만원)까지 1년치 이자분을 연 금리 2.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추가 지급(단, 1인당 지원 한도는 24천원)

※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적금의 상품명 및 이율은 은행마다 상이함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누리집 (www.kinfa.or.kr)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 (월평균 35만원, 최대 64만원)
지원요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1만원, 최대 52만원) 적립
지원요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청년저축계좌('20. 4월~)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지원요건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지원내용 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 장려금 최대 10만원, 내일키움 수익금을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요건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신청문의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담당자용)

○ 수신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과 '아기'를 함께 기재(이름이 있는 경우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방법 남·여 구분(3 또는 4)을 기재 후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작성
*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

(예시1) 2016. 1. 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0000
서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

○ 처리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Ⅲ.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p.44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담당자용)

의료급여전산번호 시스템을 이용 의료급여전산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지원가능

① 보육사업 안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격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2.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②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
출생신고 완료전인 미혼부 자녀는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자'로 적용
* 자료구분(4)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4)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⑦ : 성별(남: 1, 3 /여: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1, 여: 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2000년 00, 2007년 07)
⑩~⑬ : 일련번호

• 처리근거 : 20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82p 참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서류준비사항
   ① 아동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②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자료 등)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친자검사비 지원 : 전국 17개 권역별 미혼모부 거점기관(p.10 참고)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가정법원에 확인신청서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양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 – 이용안내 – 양식모음

3.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미혼부라면 법률구조공단이 출생신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60~92% 할인)	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이동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주민센터 전용 ARS(1523), 이동통신사 대리점
과태료 50% 이내 감면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법무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1577-0990)
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의 만 5~18세 유·청소년
지원내용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신청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svoucher.kspo.or.kr)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9만원)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www.mnuri.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www.mnuri.kr)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제도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지원 등
지원내용	주민센터
신청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전화 상담

한부모(미혼모·부)상담전화

1644-6621

온라인 상담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www.mogef.go.kr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